

## 수업일수

- 학칙 제8조
- 수업일수는 매 학기 **15주 이상**,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.
  - 단,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(천재지변 등)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.

## 휴강

- 휴강 발생 사유 : 법정공휴일 ,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
- 보강계획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 필수

## 정기휴업

- 학칙 제9조
1. 여름방학
  2. 겨울방학
  3. 일요일
  4. [개교기념일](#)
  5. 국정공휴일

## 임시휴업

- 학칙 제10조
-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- [임시휴업일](#)이 지정되면 본부에서 공지